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2024. 2. 28.)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10
- 나. 제 안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안일자: 2024년 2월 16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2월 20일(화)

2. 제안사유

「스포츠클럽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다둥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둥이 적용 범위 수정(안 제11조제1항제2호바목)
- 나.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감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1조제1항제4호바목)
- 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규정 반영(안 제11조제1항제4호가목, 나목)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 「스포츠클럽법」
- 3) 「국민체육진흥법」

나. 입법예고: 2024. 1. 18.~ 2. 7.(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시 다둥이 적용 범위 수정 및 스포츠클럽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11조제1항제2호바목은 마포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다둥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수정하였음.
 - 이는 서울시의 다자녀 가족의 기준 완화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기존의 “막내 나이가 13세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족”에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으로 정비되었고, 이로 인해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등 감면 확대 협조 요청¹⁾에 따라 우리구 공공시설 중 마포구립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는 것임.
- 그리고, 「스포츠클럽법」 제정(시행 2022.6.16.)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및 등록스포츠클럽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음.

1)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8624(2023.5.24.)호

[표 1] 스포츠클럽의 비교 구분

구분	등록클럽	지정클럽
대 상	모든 체육활동 단체(법인포함)	등록 스포츠클럽 中
최종권한	구청장 (등록증 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스포츠클럽 지정)
권한의 위임·위탁	자치구 체육회 (서류심사·검토)	대한체육회 (서류접수·심사)
관련조항	스포츠클럽법 제6조	스포츠클럽법 제9조
신청주기	월 1회, 매월 14~16일까지(3일간)	연 1회

- 신설하려는 내용은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전용사용료를 감면해주려는 것인데, 안 제11조제1항제3호는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게는 50%를 감면해주는 것이고, 안 제11조제1항제4호마목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은 80%를 감면하는 것임.

[표 2] 스포츠클럽 조례 운영 자치구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자치구별	감면율	
	지정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마포구 조례안	100분의 80	100분의 50
관악구	100분의 10	100분의 10
금천구	100분의 100	100분의 80
노원구	전액 면제	80퍼센트 감면
동대문구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30 이하
성동구	100분의 100	100분의 80
종로구	100분의 50	100분의 50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성북구, 종로구	별도의 감면 규정 없음	

- 감면 비율을 차등화시킨 구체적 근거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2)가 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3)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조례 내에서 감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아울러, 동 조례에 인용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0.12.8.)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함.
- 안 제11조제1항제4호(중전의 제3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및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 수정함.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다둥이 사용료 할인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스포츠클럽 감면할인 혜택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활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됨.

2) 「스포츠클럽법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2015.11.19., 2017.2.9., 2020.12.31.>

1.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21.12.30.>

2.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바.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3.12.28.>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19.3.28.>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0.2.27.>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31.)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호에서 이동, 2021.12.30.] (신설 2020.12.31.)

3.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다. 삭제 (2017.2.9)

라.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이 공익 목적의 행사를 주최·주관 또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제2호에서 이동, 2021.12.30.] (신설 2020.12.31.)

4. 전용사용료 전액 면제 :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제3호에서 이동, 2021.12.30.]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2020.12.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